

---

**2017년 제12회 전자·IT의 날  
유공자 정부포상 계획**

---

**2017. 5.**

# I

## 전자·IT의 날 개요

### 1

#### 배경 및 목적

- 전자·IT수출 1,000억달러 달성(2005.12)을 기념하고 전자·IT업계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 한국전자산업대전 개막일(2015년은 10.14(수))을 『전자의 날』로 제정

\* 전자·IT산업 수출(억 달러) : ('87)100→('92)200→('05)1,000→('14)1,739

- 2006년 제1회 『전자의 날』 행사(기념식 개최 및 정부포상) 이후, 매년 정례화하여, 수출 1위 산업으로 전자·IT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노고를 격려

\* 2009년부터 『전자·IT의 날』로 변경하고, 2015년 제10회 『전자·IT의 날』 행사시 정부포상 11점(훈장 2, 포장 1, 대통령 5, 국무총리 5), 장관표창 27점 등 총 40점의 포상 수여

#### < 『전자·IT의 날』 정부포상 추진경과 >

- 1989년 : 전자산업 30주년 기념식 개최 및 포상
  - 1999년 : 전자산업 40주년 기념식 개최 및 포상
  - 2005년 : 전자의 날 제정(12월)
  - 2006년 : 제1회~제3회 『전자의 날』 기념식 개최 및 포상
  - 2009년 : 전자·IT산업 50주년 개최 및 포상
  - 2015년 : 제10회 전자·IT의 날 기념식 개최 및 포상
  - 2016년 : 제11회 전자·IT의 날 기념식 개최 및 포상
  - 2017년 : 제12회 전자·IT의 날 기념식 개최 및 포상(예정)
- \* 제4회('09년)「전자·IT의 날」행사는 50주년 기념식으로 대체

### 2

#### 2017년 행사개요

- 행사일시 : 2017. 10. 17(화) 10:30(예정)
- 행사장소 : 코엑스 4층
- 참석대상 :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등 300여명
- 주요내용 : 개회식, 정부포상 수여, 축하 및 리셉션 등
- 주 최 : 산업통상자원부
- 주 관 :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

## II

# 전자·IT 유공자 포상계획

### 1

## 포상규모

구 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(예정)
산업훈장	2	2	2	2
산업포장	1	1	1	1
대통령표창	5	5	5	5
국무총리표창	5	5	5	5
장관표창	27	27	27	27
계	40	40	40	40

### 2

## 포상부문 및 자격요건

포상 부문	추천 부문	자격요건 (추천기준)	비고
산업훈장 산업포장 표창 -대통령 -국무총리 -장관	경영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년간 전자IT기업을 경영하면서 전자IT산업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현저하게 기여한자로서 다음 각호에 공이 있는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술개발, 수출증대, 수입대체, 고용창출, 노사화합 등에 공이 큰 자</li> <li>- 종업원의 복지향상 및 기업윤리 측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</li> </ul> </li> </ul>	<b>부문별 최소 수공기간</b> 훈장 : 15년 포장 : 10년 표창 : 5년
	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자IT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다음 각호에 공이 있는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시장개척, 신제품개발, 품질관리, 원가절감, 특허획득 등 생산성 향상에 공이 큰 자</li> <li>- 책임감과 협동심이 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자</li> <li>- 노사협조에 공이 큰 자</li> </ul> </li> </ul>	
	공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자IT산업 관련기관, 단체의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실적이 있고 다음 각호에 공이 있는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업정보, 인프라 구축, 시장개척, 생산성 향상, 정책 및 기획, 학술연구, 인력양성, 기술개발, 기업경영지원, 특허대응 등에 공이 큰 자</li> </ul> </li> </ul>	

**3****재포상 금지**

-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10년 이상, 포장은 7년 이상,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

받은 훈장 (표창)	받으려는 훈장(표창)			비 고
	훈장	포장	표창	
훈장	10년	-	3년	기간) 수여일~행자부에 추천일
포장	7년	-	3년	
표창	3년	3년	3년	

- 이미 받은 훈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대상으로 추천된 자 (동종동급 서훈금지)
  -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
**4****포상 제외 대상**

- 1)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
  - 가) 수사 중이거나,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  - 나) 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
  - 다)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- 라)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- 마)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- 바)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- 사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  - 아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2)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
3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

가)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8조의4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
나) ‘임원’ 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※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
-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<http://dart.fss.or.kr>, [회사별검색-사업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](#))을 통해 확인

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
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
다)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4)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
가)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다) 다만, 상기 가), 나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5)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
가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
나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

\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6) 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, 「관세법」 제116조의2 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0조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

\* (국세)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, 체납액 등 공개

\* (관세)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

\* (지방세)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

7)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

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## 5 포상대상자 선발 절차

○ 전자IT기업,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의 신청과 추천을 받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후보자 추천

○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자 선정

○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포상자에 대한 공개검증을 실시하고 최종 포상수상 대상자를 행정자치부로 추천

## 6

### 제출서류

- 포상신청서 1부
- 공적조서 1부
- 이력서 1부 (이력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명함판)
-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
- 해당 증빙자료 각 1부
  - 재무제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, 기업 지정 및 환경 인증, 기술개발 및 수상 실적 증빙자료
  - ※ 각종양식은 KEA 홈페이지([www.gokea.org](http://www.gokea.org)) 공지사항 참조

## 7

### 포상신청서 제출

- 신청기간 : 2017. 6. 16(금)까지
- 신청방법 : 우편(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) 또는 방문접수
  - 신청서, 공적조서, 이력서는 파일(흔글 또는 워드)로도 제출 요망
- 제출처 :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자산업정책실 포상 담당자
  - 우 편 :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 11 전자회관 12층 우)121-835
  - T) 02-6388-6173, e-Mail) [chwkim@gokea.org](mailto:chwkim@gokea.org)

- < 붙임 >
1. 포상신청서 1부
  2. 공적조서 1부
  3. 이력서 1부.
  4. 정부포상 동의서 1부. “끝”<붙임 1>